



## 추방유예 행정명령(DAPA ) 안내서

2014년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추방유예 행정명령(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을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법률이 아니며 대통령의 권한으로 시행되는 행정 정책입니다. 행정명령은 일부 자격조건을 갖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3년간 유효한 추방을 유예받고 노동 허가증을 발급받는 조치입니다.

민권센터는 미이민업무국(USCIS)의 발표 내용을 근간으로 지금 참고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향후 자세한 시행지침이 발표되면 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 1. 자격요건

DAPA는 모든 서류미비자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과 승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DAPA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 (**행정명령 발표일(2014년 11월 20일) 기준**)
- **2010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
- 행정명령 발표일 당시 **미국에 거주**
- 행정명령 발표일 당시 **서류미비 상태**
- 우선 추방 대상자(예: 중범죄자, 테러범 및 특정 범죄자)가 아닌 경우
- **신상확인 절차를 통과한 후 승인**

#### 나. DACA 확대 적용

금번 추방유예 행정명령은 기존의 DACA(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의 자격요건도 확대했습니다.

- 연령 상한선(2007년 기준 31세, 1981년 6월 15일 이전 출생인) **철폐**
- 입국 당시 연령 기준(**16세 이하**)은 동일
- 미국내 지속거주 기준이 기존의 2007년 6월 15일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로 변경
- 추방유예, 노동 허가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일단 현재 승인 심사 중이거나 향후 신청할 신청인부터 적용)

### 2. 신청 시점과 절차

미이민업무국은 DACA 확대 적용에 따른 신청은 행정명령 발표일로 부터 약 **90일 이후** 부터, DAPA 신청은 약 **180일 이후** 부터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신청서 접수 개시 일자와 절차는 향후 미이민업무국이 공지합니다.



### 3. 심사와 승인 소요기간

실제 소요기간은 미이민업무국의 DAPA 실행 준비 정도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일단 미이민업무국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와 승인을 2015년말(2016년 이전)까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청인들은 신청서 접수 후 60일 안에 미이민업무국으로부터 접수 통지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 4. 신청 마감

미이민업무국은 신청 마감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접수가 시작되면 신청여부를 신속히 결정해 바로 신청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5. 준비 사항

신청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향후 발표될 미이민업무국의 지침(가이드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잠재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 **입국과 본인 증명 기록:** 입국증(I-94), 여권, 운전 면허증 및 기타 신분증
- **시민(영주)권자 자녀의 부모임을 증명하는 기록:** 자녀 출생 증명서, 학교발행 통지문 등
- **미국 거주 기록(최소 지난 5년간 또는 그 이상):** 세금납부 기록, 각종 고지서, 은행 입출금 내역서 및 각종 공식 기록 등
- **참고 사항:** 부부가 신청할 경우 남편과 부인이 각각 따로 증빙 기록을 준비하길 권고합니다. 신청서 접수와 심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거나 승인 날짜도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 기록은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음을 증명하도록** 연도와 날짜가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6. 주의 사항

- 아직 공식 신청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실행까진 수 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거나 빨리 승인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등의 **사기행각에 속지 마십시오.**
- 경범죄나 티켓(음주 운전 등)등의 기록이 있는 잠재 신청인들은 먼저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 참고 사항: 미이민업무국은 DAPA를 승인받은 신청인들의 신변정보는 미이민단속국(ICE)에 이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 또는 범죄조사 등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변정보를 이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 7. 민권센터 무료 봉사

DAPA에 관한 문의가 있거나 향후 법률상담과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길 원하는 분들은 민권센터 (718-460-5600/ jubum.cha@minkwon.org, 업무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에 연락하십시오. 민권센터 소속 변호사들과 실무진이 제공하는 모든 봉사는 **무료**입니다.